|  |  |  |
| --- | --- | --- |
|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기업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161호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기업 관리방법>이 2014년 12월 4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5년 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검역 신고행위를 규율하며 정상적인 검사검역 업무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 내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검사검역 신고기업이라 함은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과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을 포함한다.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이라 함은 검사검역부서에서 본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을 지칭한다. 수출화물 생산·가공업체의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이 방법에서 정한 자주신고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이하 '위탁인'으로 약칭)의 위탁을 받아 검사검역부서에서 위탁인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국내기업을 지칭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검사검역 신고인력이라 함은 소속기업을 위하여 검사검역부서에서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그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검사검역 신고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비안(備案)관리**  **제5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 신고기업 비안(備案)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4.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표>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신분증 복사본; 5. 기업의 공인 인발; 6. 검사검역 신고 전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검역 신고 전용인감의 인발을 제출하여야 함; 7. 출입국 속달우편 운영기업은 국제속달우편업무 경영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상 서류에는 기업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같이 제출하여 복사본과 원본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서류가 완비되었고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을 위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검사검역 신고기업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검사검역 신고 전에 검사검역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격려한다. 이미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 시 이 방법 제5조에 나열된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8조** 이미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는 검사검역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행한 해당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인력이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신고인력은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 시 비안(備案)번호 및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검역 신고업무**  **제9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검사검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검역 신고수속 처리; 2. 출입국 검사검역비 납부; 3. 검사검역부서와 연락을 취하고 검사검역부서를 협조하여 검사검역 실시; 4. 검사검역증명서 수령.   **제8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출입국항 또는 검사검역 감독·관리업무 집중지의 검사검역부서에서 본 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자주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에 위탁하여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신고업무 처리 시 위탁인이 발행한 검사검역 신고 대행 수권 위임장을 검사검역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권 위임장에는 화물정보, 구제적인 위탁사항, 위탁기한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탁인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위탁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 검사검역 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 출입국 검사검역비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비 수취 상황을 위탁인에게 사실대로 고하여야 하며 검사검역부서의 명의를 빌려 위탁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3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검사검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검사검역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비안(備案) 수속 처리 시 제출하는 서류 및 작성정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업무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 상황과 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은 매 년 3월 말 전에 직전연도의 <검사검역 대리신고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기업의 기본정보, 검사검역 법률·법규 준수상황, 검사검역 신고업무 관리제도 수립상황, 검사검역 신고인력 관리상황, 검사검역 신고기록 관리상황, 검사검역 신고업무 상황 및 분석, 검사검역 신고 착오 및 원인분석, 자기평가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에 대해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신고인력에 대해 검사검역 신고 착오 점수 관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착오 점수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신용기록에 기입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신용등급, 분류관리의 유형 및 검사검역 신고 착오 기록 상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검역 신고기업 비안(備案)표>,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표>에 기재된 비안(備案)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비안(備案)한 검사검역부서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은 비안(備案)한 검사검역부서에 검사검역 신고기업 또는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정보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비안(備案)정보가 말소되는 경우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검사검역 신고인력 비안(備案)정보도 같이 말소된다.  **제19조** 비안(備案) 변경, 말소 등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벌률책임은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부담한다.  **제20조** 검사검역신고협회 등 업계조직이 검사검역 신고기업의 자율관리를 시행하고 검사검역 신고인력 능력인정 및 검사검역 업무 교윤훈련 등을 추진하며 검사검역 업계의 규범화,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부당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신고협회 등 업계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업계조직의 조기경보, 조직, 조율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업계조직이 업계 자율제도를 수립, 완비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검사검역 대리신고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검사검역 신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검역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검사검역부서의 명의를 빌려 위탁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하는 검사검역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검사검역부서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역 업무인력을 협박하거나 검사검역 업무인력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 3. 검사검역 신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행위.   **제23조** 검사검역 신고기업이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4조** 검사검역부서는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정보 수집조목'에 따라 검사검역 신고인력의 검사검역 신고 착오 점수를 계산한다.  **제25조** 출입국 속달우편 운영기업이 위탁인의 출입국 속달우편 검사검역 신고업무 대행 시 검사검역 신고 수권 위임장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검사검역부서는 대리신고기업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등 비(非)기업 조직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非)무역 성격의 수출입 활동을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검사검역 신고수속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이 방법에서 '이상'이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며 '이하'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도'라 함은 1개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인력 관리규정>(국가질검총국 령 제33호), <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국가질검총국 령 제12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출입국 속달우편 검사검역 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 령 제3호),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국가검사검역국 령 제16호)과 이 방법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  | **出入境检验检疫报检企业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161号  《出入境检验检疫报检企业管理办法》已经2014年12月4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4月1日起施行。  局 长  2015年2月15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对出入境检验检疫报检企业的监督管理，规范报检行为，维护正常的检验检疫工作秩序，促进对外贸易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报检企业的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负责所辖区域报检企业的日常监督管理工作。  **第三条** 本办法所称报检企业，包括自理报检企业和代理报检企业。  自理报检企业，是指向检验检疫部门办理本企业报检业务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出口货物的生产、加工单位办理报检业务的，按照本办法有关自理报检企业的规定管理。  代理报检企业，是指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以下简称委托人）委托，为委托人向检验检疫部门办理报检业务的境内企业。  **第四条** 本办法所称报检人员，是指负责向检验检疫部门办理所在企业报检业务的人员。  报检企业对其报检人员的报检行为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二章 备案管理**  **第五条** 报检企业办理报检业务应当向检验检疫部门备案，备案时应当提供以下材料：  （一）《报检企业备案表》；  （二）营业执照复印件；  （三）组织机构代码证书复印件；  （四）《报检人员备案表》及报检人员的身份证复印件；  （五）企业的公章印模；  （六）使用报检专用章的，应当提交报检专用章印模；  （七）出入境快件运营企业应当提交国际快递业务经营许可证复印件。  以上材料应当加盖企业公章，提交复印件的应当同时交验原件。  **第六条** 材料齐全、符合要求的，检验检疫部门应当为报检企业办理备案手续，核发报检企业及报检人员备案号。  **第七条** 鼓励报检企业在报检前向检验检疫部门办理备案。已经办理备案手续的报检企业，再次报检时可以免予提交本办法第五条所列材料。  **第八条** 已备案报检企业向检验检疫部门办理报检业务，应当由该企业在检验检疫部门备案的报检人员办理。  报检人员办理报检业务时应当提供备案号及报检人员身份证明。  **第三章 报检业务**  **第九条** 报检企业可以向检验检疫部门办理下列报检业务：  （一）办理报检手续；  （二）缴纳出入境检验检疫费；  （三）联系和配合检验检疫部门实施检验检疫；  （四）领取检验检疫证单。  **第十条** 报检企业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口岸或者检验检疫监管业务集中的地点向检验检疫部门办理本企业的报检业务。  自理报检企业可以委托代理报检企业，代为办理报检业务。  **第十一条** 代理报检企业办理报检业务时，应当向检验检疫部门提交委托人授权的代理报检委托书，委托书应当列明货物信息、具体委托事项、委托期限等内容，并加盖委托人的公章。  代理报检企业应当在委托人授权范围内从事报检业务，并对委托人所提供材料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第十二条** 代理报检企业代缴出入境检验检疫费的，应当将出入境检验检疫收费情况如实告知委托人，不得假借检验检疫部门名义向委托人收取费用。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三条** 报检企业办理报检业务应当遵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和检验检疫规章的规定，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十四条** 报检企业办理备案手续时，应当对所提交的材料以及所填报信息内容的真实性负责且承担法律责任。  **第十五条** 检验检疫部门对报检企业的报检业务进行监督检查，报检企业应当积极配合，如实提供有关情况和材料。  代理报检企业应当在每年3月底前提交上一年度的《代理报检业务报告》，主要内容包括企业基本信息、遵守检验检疫法律法规情况、报检业务管理制度建设情况、报检人员管理情况、报检档案管理情况、报检业务情况及分析、报检差错及原因分析、自我评估等。  **第十六条** 检验检疫部门对报检企业实施信用管理和分类管理，对报检人员实施报检差错记分管理。报检人员的差错记分情况列入报检企业的信用记录。  检验检疫部门可以公布报检企业的信用等级、分类管理类别和报检差错记录情况。  **第十七条** 《报检企业备案表》《报检人员备案表》中载明的备案事项发生变更的，企业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持变更证明文件等相关材料向备案的检验检疫部门办理变更手续。  **第十八条** 报检企业可以向备案的检验检疫部门申请注销报检企业或者报检人员备案信息。报检企业注销备案信息的，报检企业的报检人员备案信息一并注销。  **第十九条** 因未及时办理备案变更、注销而产生的法律责任由报检企业承担。  **第二十条** 鼓励报检协会等行业组织实施报检企业行业自律管理，开展报检人员能力水平认定和报检业务培训等，促进报检行业的规范化、专业化，防止恶性竞争。  **第二十一条** 检验检疫部门应当加强对报检协会等行业组织的指导，充分发挥行业组织的预警、组织、协调作用，推动其建立和完善行业自律制度。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二条** 代理报检企业违反规定扰乱报检秩序，有下列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的规定进行处罚：  （一）假借检验检疫部门名义向委托人收取费用的；  （二）拒绝配合检验检疫部门实施检验检疫，拒不接受检验检疫部门监督管理，或者威胁、贿赂检验检疫工作人员的；  （三）其他扰乱报检秩序的行为。  **第二十三条** 报检企业有其他违反出入境检验检疫法律法规规定行为的，检验检疫部门按照相关法律法规规定追究其法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二十四条** 检验检疫部门按照“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信息采集条目”对报检人员的报检差错进行计分。  **第二十五条** 出入境快件运营企业代理委托人办理出入境快件报检业务的，免予提交报检委托书。检验检疫部门参照代理报检企业进行管理。  **第二十六条** 机关单位、事业单位、社会团体等非企业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从事非贸易性进出口活动的，凭有效证明文件可以直接办理报检手续。  **第二十七条** 本办法所称“以上”包含本数，“以下”不含本数。“年度”指1个公历年度。  **第二十八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二十九条** 本办法自2015年4月1日起施行。国家质检总局《出入境检验检疫报检员管理规定》（国家质检总局令第33号）、《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国家质检总局令第128号）同时废止。《出入境快件检验检疫管理办法》（国家质检总局令第3号）、《出入境检验检疫报检规定》（国家检验检疫局令第16号）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